-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(안) -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 2017년 4월 20일 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4월 4일, 서울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4월 6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17년 4월 2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)

가. 제안이유

- ○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」제13조에 따라 민간투 자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할 예정인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최초요금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- 우이신설선 이용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, 수도권 교통수단간 환 승 편의 제공, 그리고 어르신, 장애인, 유공자 및 어린이, 청소년들

에 대한 교통복지 제공을 위해, 우이신설선에도 서울시 도시철도 요 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

○ 서울시의 다른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기본요금은 1,250원을 부과하고, 수도권 내 다른 도시철도와 버스간 환승 시에는 총 4회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는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며, 또한 어르신, 장애인, 유공자 및 어린이,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감면 · 할인제도도 동일하게 시행할 계획임

나. 주요골자

가. 징수대상 시설

○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

○ 구 간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(북한산우이역) ~ 동대문구 신 설동 (신설동역) 총13개역(일반역10개소, 환승역3개 소), 차량기지 1개소

나.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

- 1) 도시철도 단독통행 시 요금
 - 요금체계 : 서울시 지하철요금제(거리비례제)
 - 요금현황

구 분	기본 (10kn		추가요금
	카 드	현 금	(10km초과)
일 반	1,250원	1,350원	- 10~50km : 5km마다 10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100원
청소년	720원	1,350원	- 10~50km : 5km마다 8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80원
어린이	450원	450원	- 10~50km : 5km마다 5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50원

2) 버스와 환승통행 시 요금

○ 요금체계 :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(거리비례제)

○ 기본요금 : 환승 시 이용한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, 10km 이내 (단, 광역버스 30km)

○ 추가요금 : 1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(청소년 80원, 어린이 50원)

○ 통합환승할인제 적용기준

- 승·하차시에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환승할인 적용
- 환승횟수는 4회(5회 탑승)까지 인정, 6회 탑승부터 별도통행 처리
- 앞 교통수단 하차후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까지의 갈아타는 시 간이 30분 이내에서만 통합요금제 적용(단, 21시~07시 까

지는 60분)

- 모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이 가능하나, 지하철과 지하철의 환승은 환승통로를 통해서만 환승가능 (단, 서울역 경의선 환 승은 제외)

다. 요금산출 기초자료

- 협약상 근거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 요금제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적용
- 라. 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
- 서울시 지하철 요금 감면대상, 감면비율과 동일
- 마. 요금 징수방법 :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징수 방식
- 사. 유사시설의 요금 수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(시설사용 내용)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(사용료)
-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(사용요금의 의 회 의견청취)
- 나. 예산조치 :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른 기준운임과 최초

요금간의 차액은 예산으로 지원 필요

※ 공기연장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간 에 기준운임 금액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향후 소송 등을 통해 기준 운임이 결정되면, 운영개시일 부터 소급 적용하여 요금차액 지원 실시

다. 합의

-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및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간 합의
 - 요금조정 시기('17.7월 말), 기본요금 및 거리추가요금 등 수도권 전철요금과 동일요금체계 적용에 대하여 합의
 -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를 통한 시스템 개선 일정 합의
- 실시협약에 따라 약정한 사업자시행자 기준운임 결정은 향후 소송결 과 등에 따라 운영 개시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합의함
- 라. 기 타 (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결과)
- 최초요금은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므로 서울공공투자센터가 검토할 대상이 아님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개 요

○ 동 의견청취안은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」제13조에¹⁾ 따라 사용요금을 최초 결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.

서울시는 '우이~신설선 민간투자사업 요금정책 적용'회의결과에²⁾ 따라 타 서울시 도시철도와 동일한 기본요금 부과,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 반영, 현행과 동일한 요금 할인 및 감면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안을 제출함

나.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(안)에 대한 검토의견

- 서울시 대중교통 운임은 '15.6.27일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, 경기도, 인천시, 한국철도공사 등과 통합환승할인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교통카드 사용유무,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여부 및 이용거리 등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별로 차등 부과되고 있음(붙임 1참조)
- 대중교통은 왕복 이용 특성을 갖고 다른 물가에 비해 이용자가 느끼는 요금 변동에 대한 체감 수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, 대중교통 운임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최소 교통권 보장 및 저소득층 보호 차원 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

¹⁾ 제13조(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)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 단,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²⁾ 우이-신설선 민간투자사업 최초운임 요금 관련 회의결과 통보, 교통정책과-27480(2016.12.6.)

따라서,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은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 요금 체계와 환승할인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 현재의 요금체계와 동일하 게 함으로써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가 요금체계에 대한 혼란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

○ 한편, 지하철 양공사의 운영적자는 연간 약 4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는 반면,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경우 지하철 양공사와는³⁾ 달리 무임손실에 대해 서울시가 재정지 원4)5)6)7) 하도록 함

이와 관련하여, 현재 지하철 양공사의 무임손실률과 무임승차 증가율을 고려할 때 우이신설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액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서울시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

또한, 실시협약서 제52조에8) 따르면 "최초운임을 제외한 연도별

【지하철 무임수송 현황(단위: 백만명, 억원)】

구 분	승차인원 (A)	무임인원 (B)	무임점유 (B/A)	당기순손실 (a)	무임손실 (b)	순손실대비 (b/a)
합 계	1,782	250	16.6%	4,137	3,155	61.2%
서울메트로	1,102	150	13.6%	1,427	1,894	132.7%
도시철도공사	680	100	14.8%	2,710	1,261	46.5%

⁴⁾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추진방안, 교통정책과-16216(2015.8.4.)

^{3) &#}x27;15년 기준으로 볼 때 승차인원 대비 서울메트로 13.6%, 서울도시철도공사 14.8%의 무임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, 당기순손실액 대비 무임손실률은 서울메트로 132.7%, 서울도시철도공사 46.5%를 차지함

⁵⁾ 우이-신설선 민간투자사업 최초운임 요금 관련 회의결과 통보, 교통정책과-27480(2016.12.6.)

^{6) 「}우이-신설 도시철도(경량전철)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」제52조(운임의 결정 및 조정) ⑥ 불가항력 사유, 주무관청의 귀책사유,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나 수익이 발생하고,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부담분 혹은 수익의 일부를 운임을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운임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운임의 적절한 조정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,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운임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그 의뢰 결과에 따라야 한다.

^{7) 「}우이-신설 도시철도(경량전철)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」제53조 (운임의 징수) <u>④ 무임승차 및 운임</u> 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체계에 따른다. 단, 무임승차는 운영개시 후 3.5년을 우선 반영하고 추후 우이~방학 연장구간 협상시 정부의 정책변화를 반영하되 변화가 없을 경우 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재협의하기로 한다.

^{8)「}우이-신설 도시철도(경량전철)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」제52조 (운임의 결정 및 조정) ④ 최초운임

운임은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"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향후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해당 운송적자를 서울시 재정지원 또는 요금인상으로만 해결하고자 할 수 있는바, 서울시는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·감독해야 할 것임

특히,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기관들의 경우 전체 수입의 82%~96%가 운임수입으로 구성되어⁹⁾ 있는 등 요금수입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이신설 도시철도가 기존 운영기관들을 답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

○ 한편,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정부 및 국회에서 정한 법령 등에 따라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총 운영적자의 68%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, 우리사회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손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무임손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함

마. 서울시 요금정책 적용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 대한 검토

- 1) 기본요금 징수에 따른 사용자요금과의 차액 지원(실 이용자 수준)
- 서울시는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최초운임을 기존 지하철 요금(1,250 원)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당초 우이신설 실시협약에서¹0) 정한 기준 운임과의¹1) 차액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,

을 제외한 연도별 운임은 원칙적으로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,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운임을 전년도 9월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10월말까지 제출하고,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최종적인 운임을 결정한다.

⁹⁾ 전체 수입에서 운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하철의 경우 약 82%, 버스의 경우 95.9%에 이름

¹⁰⁾ 우이-신설 도시철도(경량전철)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, 2009.4.9., 서울특별시, 주식회사 우이트랜스

¹¹⁾ 기준 운임 산정(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기준) 1,150원, 물가상승률 반영시 기준운임 1,449원

우이신설 도시철도와 공사연장에 대한 직·간접비 및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기준운임에 대한 최종 협약을 확정해야 할 것이고 증가추세인 65세 어르신 무임승차¹²⁾, 청소년 및 어린이 요금 등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

2)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(조조시간대)

○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은 조조시간대 기본요금 할인으로 오전 첨두 시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분산시켜 대중교통 혼잡도를 개선한다는 측 면에서는 바람직하나,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재정지원하 지 않는 점 등과 관련하여 예산 범위 및 각 기관별 형평성 등에 대 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

3) 외국인 영주권 어르신(65세 이상) 지하철 무임승차

○ '15.6.27일 대중교통 요금인상 당시 반영된 외국인 영주권 어르신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는 교통복지와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재정지원과 코레일 구간 등 기타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 참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지하철 양공사 등에 65세 이상 어르신 및 외국인 영주권자 무임승 차와 조조시간대 요금 할인을 재정지원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이신설 사업자만 재정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

^{12) &#}x27;15년 121백만명(1,508억 45백만원), '16년 213백만명(2,658억 3백만원), '17.3월 52백만명(66백만원)

- 일관된 서울시 정책 유지를 위해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른 것으로,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재정지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- 2017년 예산 편성 당시 요금 할인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바,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
 - 올해의 경우 우이신설 민간사업자와 사업비 정산을 해야 하고 서울시가 사업비 정산으로 받아야 할 금액이 재정지원 예상액을 초과함에 따라 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동의

-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 요금체계와 환승할인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 요금체계를 현재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가 요금체계에 대한 혼란을 받지 않도록 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음
- 다만, 지하철 양공사와는 달리 무임손실에 대해 서울시가 재정지원 하도록 함에 따라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·감독할 것을 전 제로 동 의견청취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함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 임 1】 서울시 대중교통 운임현황

▶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운임

		기	존		변 경	
구 분	종류	교통카드	현금	교통카드	현금	조조할인 (교통카드)
	일 반	1,050원	1,150원	1,200원	1,300원	960원
간지선버스	청소년	720원	1,000원	720원	1,000원	580원
	어린이	450원	450원	450원	450원	360원
	일 반	1,850원	1,950원	2,300원	2,400원	1,840원
광역버스	청소년	1,360원	1,800원	1,360원	1,800원	1,090원
	어린이	1,200원	1,200원	00원 1,200원 1,200원 99 50원 1,100원 1,200원 88	960원	
수화버스	일 반	850원	950원	1,100원	1,200원	880원
순환버스 지선버스	청소년	560원	800원	560원	800원	450원
(차등요금)	어린이	350원	350원	350원	350원	280원
	일 반	1,850원	1,950원	2,150원	2,250원	_
심야버스	청소년	1,360원	1,800원	1,360원	1,800원	_
	어린이	1,200원	1,200원	1,200원	1,200원	(교통카드) 960원 580원 360원 1,840원 1,090원 960원 880원 450원
마을버스	일 반	750원	850원	900원	1,000원	720원
	청소년	480원	550원	480원	550원	380원
	어린이	300원	300원	300원	300원	

※ 어린이/청소년할인은 T-money 홈페이지에서 할인 등록 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

▶ 지하철 이용운임

조 근	교통카	1회권	
종 류	기 존('15.6.27 이전)	변 경('15.6.27 이후)	1외년
일 반	< 기본운임 > 10km 이내 : 1,050원 < 추가운임 > 10~40km : 매5km마다 100원 40km~ : 매10km마다 100원	< 기본운임 > 10km 이내 : 1,250원 < 추가운임 > 10∼50km : 매5km마다 100원 50km∼ : 매8km마다 100원	교통카드운임에 100원 추가
청소년	일반요금 기준 20% 할인	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% 할인 (기본요금 720원)	할인없음 (일반운임 적용)
어린이	일반요금 기준 50% 할인	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% 할인 (기본요금 450원)	교통카드운임과 동일

▶ 대중교통 환승요금

종	류	기 존 ('04.7 이전)	변 경 ('04.7 이후)
		독립요금제	통합요금제
		이용한 교통수단별로 별도요금 지불	<기본요금> 10㎞까지 기본요금(환승무료)
일	반	- 버스↔버스, 버스↔지하철 환승시 후승수단 50원 할인	<추가요금> 10km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 추가
		∞인 교인	※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 많지 않게 함
청소	년	일반요금 기준 20% 할인	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% 할인 (기본요금 720원)
어린	<u>-</u>]이	일반요금 기준 50% 할인	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% 할인 (기본요금 450원)

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

의 안 번 호 1735

제출년월일 : 2017년 4월 4일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최초요금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징수대상 시설

○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

 \circ 구 간 :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(북한산우이역) \sim 동대문구 신설동 (신설

동역) 총13개역(일반역10개소, 환승역3개소), 차량기지 1개소

나. 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

1) 도시철도 단독통행 시 요금

○ 요금체계 : 서울시 지하철요금제(거리비례제)

○ 요금현황

구 분	기본 (10km	요금 n이내)	추가요금				
. —	카 드 현 금		(10km초과)				
일 반	1,250원	1,350원	- 10~50km : 5km마다 10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100원				
청소년	720원	1,350원	- 10~50km : 5km마다 8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80원				
어린이	450원	450원	- 10~50km : 5km마다 5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50원				

- 2) 버스와 화승통행 시 요금
 - 요금체계 :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(거리비례제)
 - 기본요금 : 환승 시 이용한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, 10km 이내 (단, 광역버스 30km)
 - 추가요금 : 1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(청소년 80원, 어린이 50원)
 - 통합화승할인제 적용기준
 - 승·하차시에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환승할인 적용
 - 화승횟수는 4회(5회 탑승)까지 인정. 6회 탑승부터 별도통행 처리
 - 앞 교통수단 하차후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까지의 갈아타는 시간 이 30분 이내 에서만 통합요금제 적용(단, 21시~07시 까지는 60분)
 - 모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이 가능하나, 지하철과 지하철의 환승은 환승통로를 통해서만 환승가능 (단, 서울역 경의선 환승은 제외)

다. 요금산출 기초자료

- 협약상 근거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 요금제와 수도권 대중교통 통 합환승할인제 적용(붙임 참조)
- 라. 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
 - 서울시 지하철 요금 감면대상, 감면비율과 동일 (붙임 참조)
- 마. 요금 징수방법 :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징수 방식(붙임 참조)
- 사. 유사시설의 요금 수준 : 붙임 참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조(시설사용 내용)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(사용료)
-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 13조(사용요금 의 의회 의견청취)

- 나. 예산조치 :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른 기준운임과 최초요금간의 차액은 예산으로 지원 필요
- ※ 공기연장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간에 기준운임 금액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향후 소송 등을 통해 기준 운임이 결정되면, 운영개시일 부터 소급 적용하여 요금차액 지원 실시

다. 합의

-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및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간 합의
 - 요금조정 시기('17.7월 말), 기본요금 및 거리추가요금 등 수도권 전철요금과 동일요금체계 적용에 대하여 합의
 -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를 통한 시스템 개선 일정 합의
- 실시협약에 따라 약정한 사업자시행자 기준운임 결정은 향후 소송결 과 등에 따라 운영 개시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합의함
- 라. 기 타 (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결과)
 - 최초요금은 사업시행자와 서울시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므 로 서울공공투자센터가 검토할 대상이 아님

따로 붙임 : 최초요금 산정관련 자료

※ 작성자 :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이성엽 (☎ 2133-2233)

붙 임

우이신설 도시철도 최초요금 산정 관련자료

1. 최초요금

가. 최초요금 산출근거

- 실시협약 제25조(운임의 결정 및 조정)
 - ⑥ 불가항력 사유, 주무관청의 귀책사유,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나 수익이 발생하고,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부담분 혹은 수익의 일부를 운임을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운임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있다.
-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합의공문(교통정책과-27480, 2016.12.6.)

〈최초요금 관련 합의사항〉

- ▶ 실제 징수하는 기본요금은 서울시 타 도시철도와 동일요금 부과
- ▶ 수도권 통합화승할인 요금제도 반영
- ▶ 재정지원 규모는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자 요금 확정시 추후 정산
- ▶ 사업자요금 산정, 재정지원 규모 결정, 재정지원방안 ⇒ 추가 협상으로 결정
 ※ 협약상 기준 운임 1.150원(10km 이내, '06.1.1. 불변가격기준)

나. 우이신설선 최초요금

- 1) 도시철도 단독통행 시 요금
 - 요금체계 : 서울시 지하철요금제(거리비례제)
 - 요금현황

구 분	기본요금(1	0km이내)	추가요금				
카 드 현 금	(10km초과)						
일 반	1,250원	1,350원	- 10~50km : 5km마다 10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100원				
청소년	720원	1,350원	- 10~50km : 5km마다 8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80원				
어린이	450원	450원	- 10~50km : 5km마다 50원 - 50km 초과시 : 8km마다 50원				

2) 버스와 화승통행 시 요금

○ 요금체계 :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(거리비례제)

○ 기본요금 : 환승 시 이용한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, 10km 이내

(단, 광역버스 30km)

○ 추가요금 : 1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(청소년 80원, 어린이 50원)

○ 통합화승할인제 적용기준

- 승·하차시에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환승할인 적용
- 환승횟수는 4회(5회 탑승)까지 인정, 6회 탑승부터 별도통행 처리
- 앞 교통수단 하차후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까지의 갈아타는 시간 이 30분 이내 에서만 통합요금제 적용(단, 21시~07시 까지는 60분)
- 모든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이 가능하나, 지하철과 지하철의 환승은 환승통로를 통해서만 환승가능 (단, 서울역 경의선 환승은 제외)

2. 요금 할인 및 감면 대상

대 상	할인율	관련 법규	비고
어린이	50%	○ 운송약관 ○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	만6세~만12세
청소년	20%	○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	만13세~만18세 만24세 이하 학교 재학생
경 로 우 대	100%	○ 노인복지법 제26조	만65세 이상 (영주권자 포함)
국 가 유공자	100%	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6조 ○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○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○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3조) 	해당자
장애인	100%	○ 장애인복지법 제30조	중증장애인 보호자1명 포함

4. 요금 징수 방법

징수기기	여객 구분	결재 수단	처리 장소
1회용 교통카드 발매기	 일반인 및 어린이 무임승차대상 승객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	현금장애인등록증,국가유공자증,주민등록증	○ FreeArea ○ 대합실
자 동 개집표기	ㅇ 이용승객	 1회용 교통카드 선후불 교통카드	ㅇ 대합실
환 승 개집표기	○ 이용승객	1회용 교통카드선후불 교통카드	○ PaidArea ○ 환승통로
일 반 정산기	선불교통카드 및 1회용 교통카드 이용승객 중 예정거리 초과 이용승객	ㅇ 현금	PaidArea자동개집표기인근
환 승 정산기	 타 노선에서 발권한 1회용 교통카드로 우이신설선에 환승하려는 승객 중 잔액 부족 승객 	ㅇ 현금	○ PaidArea ○ 환승개집표기 인근
보증금 환급기	o 1회용 교통카드 이용 승객	o 1회용 교통카드 환급 (현금500원 환불)	o FreeArea o 대합실

5. 유사시설의 요금 수준

기관명	기본 운임	운임체계
한국철도공사	1,250원	거리비례제
서울메트로	1,250원	- 기본운임 : 10km까지 1,250원 - 추가운임
서울도시철도공사	1,250원	· 10km ~ 50km : 매 5km마다 100원 추가
인천교통공사	1,250원	·50km초과 : 매 8km마다 100원 추가
공항철도	1,250원	○ 거리비례제 + 독립운임 - 독립구간운임 900원
신분당선	1,250원	○ 거리비례제 + 별도운임 - 별도운임 900원
용인경량전철	1,250원	○ 거리비례제 + 별도운임 - 별도운임 200원
의정부경전철	1,250원	○ 거리비례제 + 별도운임 - 별도운임 100원
부산교통공사	1,200원	○ 이동구간제 - 교통카드1구간(10.5km): 1,200원, - 교통카드2구간(10.5km초과) 1,400원
대구도시철도공사	1,250원	○ 균일제 - 교통카드 1,250원, 1회권 1,400원
광주도시철도공사	1,250원	○ 균일제 - 교통카드 1,250원, 1회권 1,400원
대전도시철도공사	1,250원	○ 이동구간제 - 1구역(10km이내): 1,250원 - 2구역(10km초과): 1,350원

6. 역별 운임표 (교통카드 기준)

[단위 : 원]

OD	북한산우이	솔빝공원	4.19민주묘지	기오리	화계	삼양	삼양사거리	솔샘	북한산보국문	정릉	성신여대입구	보문	신설동
북한산우이	_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350
솔밭공원	1,250	_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350
4.19민주묘지	1,250	1,250	_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
가오리	1,250	1,250	1,250	_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
화계	1,250	1,250	1,250	1,250	_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
삼양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_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
삼양사거리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_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
솔샘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_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
북한산보국문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_	1,250	1,250	1,250	1,250
정릉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_	1,250	1,250	1,250
성신여대입구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_	1,250	1,250
보문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_	1,250
신설동	1,350	1,3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1,250	_

^{※ 1}회권 이용시 상기 금액에 100원씩 가산